



제343회 임시회
2015. 10. 21.(수)

심 사 보 고 서

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충 청 북 도 의 회
정 책 복 지 위 원 회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5년 10월 2일
- 회부일자 : 2015년 10월 5일

다. 상정일자 : 2015년 10월 13일

- 제3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권석규 보건복지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도민에게 불편 부담되는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등록규제 일괄정비계획에 따라 규제를 정비 하고자 함
-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라 일부 모호하거나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례 내 위탁운영 취소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정비함으로써 동 조례의 규제 내용의 객관성·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의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(안 제11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오범진)

- 동 조례안은 「행정규제 기본법」 제4조(규제 법정주의)에 따라 규제의 명확성을 기하고자, 모호하고 추상적인 규정을 삭제, 수정 등 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동 조례안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,
 - 기존 조례 제11조에 명시된 위탁의 취소 사유 중 제1호 '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' 는 규제법정주의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기준 자체가 모호한 규정으로 이를 '수탁자가 파산, 법인정리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로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'로 수정하고,
 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5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취소 사유인 '거짓 진술,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, 그 밖의 부정행위 방법으로 위탁받은 경우'를 추가한 것으로, 법리적, 내용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< 참고자료 >

□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위탁 현황

- 수탁기간 : 2013. 2. 12 ~ 2016. 2. 11(3년간)
- 수탁기관 : (의)참사랑재단(이사장 : 최정봉)

- 위 치 :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10(미평동)
- 규 모 : 건물 3,540㎡(지하2층, 지상5층), 149병상
- 위 탁 비 : 없음
- 위탁사무
 - 치매환자 외래 및 입원진료·요양
 - 치매환자 임상 및 역학조사 연구
 - 기타 노인·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에 관한 사항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(위탁의 취소)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인전문병원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거짓 진술,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
2. 수탁자가 파산, 법인정리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로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회계부정 등 부정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
4.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11조(위탁의 취소)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노인전문병원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</u> <u>2. 수탁자가 운영약정 사항을 위반한 때</u> <u>3.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</u> 	<p><u>제11조(위탁의 취소)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노인전문병원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거짓 진술,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</u> <u>2. 수탁자가 파산, 법인정리절차 개시 신청등의 사유로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 <u>3. 회계부정 등 부정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</u> <u>4.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</u>

관계법령 발취

□ 행정규제 기본법

제4조(규제 법정주의)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,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.

제5조(규제의 원칙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며,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·인권·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·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·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25조(사용·수익허가의 취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사용·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한 경우
2.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
3.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·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
4. 거짓 진술,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
5.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·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·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·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.